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의안 번호 2017~13

제 출 자 거창군수

1. 제안이유

채무제로 성과를 바탕으로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, 연도 간 재원의 조정을 통한 군 재정 운영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적립금의 재원(안 제2조)

○ 일반회계 출연금(지방세, 순세계잉여금, 조정교부금, 보통교부세 3년 평균 초과분), 적립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

나. 적립금의 조성(안 제3조)

-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증가율을 10퍼센트 초과한 경우,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
-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퍼센트 초과한 경우,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
- 조정교부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,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
- 보통교부세가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,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

다. 적립금의 사용(안 제4조)

- 사용요건: 세입감소, 긴급한 필요
 - 한 회계연도 사용할 수 있는 한도(적립총액의 50퍼센트)
- 사용용도
 - 급격한 세입감소로 인한 부족재원 충당
 -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
 - 긴급한 대규모 사업비 등

라.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(안 제6조~제9조)

- 위원장 부군수, 8명 이내 구성
- 마. 적립금의 존속기한(안 제10조)
- 2021년 12월 31일까지(5년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○「지방자치법」제142조
- ○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: 5년간 100억원 목표, 매년 20억원 적립
- 다. 합 의: 기획감사실(규제개혁담당)
- 라. 기타사항
- 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(3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: '17. 1. 23.~2. 13.
 - (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(4) 비용추계서: 붙임
- (5) 성별영향분석: 해당사항 없음
- (6) 도내 조례 현황
 - 제정 완료(2): 경남도, 고성군
 - 입법예고(10): 양산, 창녕, 남해, 밀양, 의령, 산청, 합천, 함양, 함안, 하동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적립금의 설치 및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립금의 재원) 군수는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 으로 재정안정화 적립금(이하 "적립금"이라 한다)을 조성한다.

- 1. 일반회계의 출연금
- 2. 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

제3조(적립금의 조성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으로 적립금을 조성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.

- 1. 「지방자치법」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상의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10퍼센트 초과한 경우,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- 2.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,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- 3. 조정교부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,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- 4. 보통교부세가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,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- 5.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
- ②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.

제4조(적립금의 사용)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적립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. 다만,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.

- 1. 군의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
- 2.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
- 3.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
- 4. 채무부담 사업비
- 5. 그 밖에 군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

제5조(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) 군수는 적립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적립금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- 제6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적립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심의원회(이하 "위원회")를 두다.
 -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.
 -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재무과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-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
- 제7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- 제8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- 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3.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
- 제9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다.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0조(적립금의 존속기한) 적립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-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- 가. 제3조제1항 관련
 -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 으로 적립금을 조성하여야 한다.
- 2. 비용추계의 결과
 - 가. 추계의 전제: 2015년도 결산기준
 - 일반회계 지방세, 순세계잉여금, 조정교부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 초과하는 경우,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 - 보통교부세가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,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
나. 추계의 결과

(단위: 억원)

구	분	1차년도 (2017년)	2차년도 (2018년)	3차년도 (2019년)	4차년도 (2020년)	5차년도 (2021년)	합계
총 비용(a - b)		0	0	0	0	0	0
세출	적립금	20	20	20	20	20	100
	소계(a)	20	20	20	20	20	100
세입	출연금	20	20	20	20	20	100
	소계(b)	20	20	20	20	20	100

작성자: 기획감사실장 임영만